

용인 ~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변경실시 협약



2006. 6. 30.

건설교통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변경 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자")는 2005년 1월 10일 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던 바, 수원 이의택지개발지구 통과구간의 선형변경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제10조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사유의 발생과 고속도로 명칭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제1조 정의

- ①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② 실시협약 제2조 정의 중 "약정투자금" 항목의 부록 4(약정투자금 투입일정)를 변경실시협약 부록 2(약정투자금 투입일정)으로 변경한다.

제2조 고속도로 명칭의 변경



영덕~양재 고속도로 명칭이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사용하는 영덕~양재 고속도로를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변경한다.

제3조 총사업비의 변경(실시협약 제9조 및 부록3 관련)

당 초	변 경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금7,742.12억원 (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금8,078.12억원 (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변경실시협약 부록 1(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과 같다.

제4조 공사비의 변경(실시협약 제15조 관련)

당초	변경
공사비는 금7,000.00억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으로 한다.	공사비는 금7,336.00억원(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으로 한다.

제5조 총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의 변경(실시협약 제48조 및 부록5 관련)

당초	변경
①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본 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은 금 2,900.00억원 (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 5(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①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본 사업의 총 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은 금 3,236.00억원 (2004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변경실시협약 부록 3(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제6조 재무모델



제3조 내지 제5조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재무모델을 이 변경실시협약 부록 4로 첨부한다.

제7조 실시협약의 효력변경

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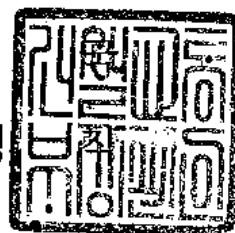
제8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

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현장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자행사는 자신의 직무
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현장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6년 6월 30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장관 추병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

